



0813 40.2000	대추	산림청장 추천
0910 10.0000	생강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축산법개정법률(안) 국회상정

—비농민자본 축산업 참여 금지—

여야4당 공동합의로 축산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중소축산농가의 육성과 소득원 확보로 규모별,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과 같이 비농민 대자본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와 국민소득 1인당 6,000불 시대를 맞는 중산층 농가의 육성을 위해 축산업의 허가상한선을 설정하며, 축산물의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중소양축가에 대한 낭비적이고 생산저해적인 정부규제를 철폐하여 개인적 창의의 범위를 넓혀 자율적인 경영개선으로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고 축산업발전을 기려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축산업은 축산농가의 고유업종이라는 개념으로 비농민 대자본의 축산업 경영을 금지하며 가칭 축산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의 1,2항) ○국민의 주요식품으로 발전한 축산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과점을 방지하여 소비자와 중소양축가를 보호하고 축산물 가격안정과 규모별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상한선을 정하여 고시하고(안 제13조의 2,2항) ○민주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소동록업자에 대한 각종 낭비적이고 생산저해적이며 실현불가능한 각종 정부규제를 철폐하여 개인적 창의의 범위를 넓혀 수입개방시대에 자율적인 경영개선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 제13조의 2,1항)

HS	품목	수입요령
0408 19.0000	조란(껍질이없는것)	양계협회 추천
99.0000	기타	
0710 80.2000	마늘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0712 20.0000	양파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90.0000	마늘	
0811 90.0000	기타	농림수산부장관 추천

신·구조 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 2(축산업이 등록 또는 허가)	제13조의 2(축산업의 허가) ①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업의 경우에는 축산업 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농민 대자본의 축산업 경영은 금지한다.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자의 시설, 기타 사업의 규모를 제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기준과 허가기준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상한선은	1. 가축의 사육상황과 생 산계획서의 제출 2. 가축의 생산, 사육 및 출하의 조절 3. 가축 또는 축산물의 비 축, 판매 기타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자"라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축산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축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축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업자가 농림수산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축명령, 초과사 육부과금, 등록, 허가의 취소) ①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종축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육 가축의 감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최고한도, 초과두수의 감축방법을 정하여 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만 감축하게 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⑤ 제1항의 규정에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을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때 2.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및 허가상한선 허가기준	축산업을 영위한 자 (신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의 허가 상한선을 초과한 축산업자는 2년 이내에 이 법이 규정한 요건에 맞도록 해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3조 제3항 및 제1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 제5항 및 제1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때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 제6항 및 제13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초과사육부과금의 징수대상이 된 종축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감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⑥ 허가업자 종축업 등록 또는 축산업 허가를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⑧ 종축업 등록 또는 축산업 허가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당해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74조(별칙) (현행과 같음)		
제74조(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 종축업		
1.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축업 또는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88년 12월15일부로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했다.

1988년 중반 육계에서 뉴캐슬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기, 충청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닭 뉴캐슬병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육계뿐만 아니라 채란계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번질 것으로 우려되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양계농가에서는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1988년 10월말 현재 뉴캐슬병 예방약 추정 소요량은 약664백만수분인데 실제 사용량은 불과 114백만수분으로 17%에 불과하여 백신접종이 크게 떨어지고 있읍니다. 또한 1987년 10월말 현재 뉴캐슬병 예방약 사용량이 163백만수분인데 비해 1988년 10월말 현재 사용량은 114백만수분으로 30%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 주요증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서 모체이행항체가 방어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2주령 전후에서부터 발병 가능하고 발병 2~15일사이에 100%까지의 폐사를 유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출기 시작하여 콧물을 보이며 호흡곤란, 기침 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다.

○신경증상으로 다리와 목의 마비, 떨림이 나타난다.

○ 산란계에선 뚜렷한 증상없이 산란율만 떨어질 수 있다(심 할 경우 산란정지)

○ 녹변을 관찰할 수 있다.

○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항체가 높지 않은 닭에서는 폐사는 심하지 않지만 다리와 목이 마비되는 신경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예방조치

○ 계사와 양계도구를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한다.

○ 동시입식, 동시 출하방법의 사육을 실시한다.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양계농가의 방문을 삼가 한다.

○ 이환계군은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 현재와 같이 강독 뉴캐슬병이 만연된 상태에서는 생독백신만으로는 100% 예방이 불가능하니 특히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3. 예방접종 요령

○ 뉴캐슬병 예방접종 기본 프로그램

닭	백신 종류	접종 방법	백신 접종 시기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	생독	음수	(1주령)	2주령	4주령	-	-
			B ₁	B ₁	B ₁		
			(1주령)	2주령	4주령	8주령 라소타또는 사독겔백신	→16~18주령
재란계	생독	음수	B ₁	B ₁	B ₁		
사독	근육주사					사독겔백신 →사독오일백신	

○ 기본프로그램 예방 접종했는데도 20~30일령때 뉴캐슬병이 발생하는 농장에서는 3차 접종시기를 3주령으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권장하며 4차 접종때도 라소타보다는 사독겔백신이 효과가 더 우수함.

-() 모체이행 항체가 높을 시 생략 가능

— 보강접종 때 사독오일백신 대신 생독백신을 사용시는 2~3개월마다, 사독겔백신을 사용시는 3~4개월마다 재접종할 것

배합사료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사료업계에 주요 현안문제로 부각되었던 배합사료 제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 확실시되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정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각 부처장관의 신청이 있을시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해 시행령 총괄부처인 상공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상공부장관은 이의 신청이 없거나 법상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지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사료업계의 배합사료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신청을 검토하여 동의하는 의견을 검토결과와 함께 상공부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사료업계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배합사료산업이 개방될 경우 그 피해는 사료업계뿐 아니라 양축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 배합사료 제조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신청했었다.

사료업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이나 자본집약적이 아닌 가공기능만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사업이고 사료원료 대부분이 이미 영양가 등이 밝혀져 새로운 자원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농림수산부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

농림수산부는 닭, 돼지, 소 등 주요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축종별로 단기 및 중·장기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안정대책에 따르면 닭과 계란값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은 ○ 생산조절을 위한 사육동향과 전망, 분석 홍보강화 ○ 생산자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생산조절기능 강화, ○ 종계 및 실용계를 생산하는 부화·종계업체의 협의체 구성운용 ○ 수매비축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가격등락폭의 최소화 ○ 닭계열화사업의

조기정착 유도 ○계사시설 개선 및 경영기술 지도강화 등이다.

중장기대책은 ○계절 및 연간수급과 가격에 대한 전망, 분석발표의 방안강구 ○가공품의 개발보급을 위한 대책추진 ○양계업종별 조합의 자율수매비축제 정착 ○계열화업체 육성을 통한 양계산업의 안정화 실현 등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장에 황영구씨 선출



◀
황
영
구
회
장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임 지재선 회장이 미국, 캐나다의 외유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협회운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지난 12월2일 임시총회에서 황영구 전 낙농육우협회장을 신임 회장에 선출하였다.

황영구 신임회장은 1915년생으로 강원도 양양출신으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 거쳐 한국종축개량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지낸 바 있다.

축협법개정(안) 심의통과

—조합장 직선제—

국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제2소 위원회는 지난 12월12일 축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통과시키고 본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를 비롯하여 각지역조합장들

이 직선제로 선출케 된다. 지역축협조합장은 8월까지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새로 바뀌는 법에 따라 조합원이 선출하게 되며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는 매년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년도 1개월전에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보고키로 했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를 용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대해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었다.

임원의 선출은 중앙회장과 상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조합장중 선출하도록 했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농림수산부장관에 김식씨



정부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면서 농림수산부장관에 김식 전의원을 임명했다.

김식 신임농림수산부장관은 전남 강진 태생으로 강진농고를 졸업했고 육사11기 출신으로 육군병참학교장을 거치며 '80년 소장으로 예편했다. 11대, 12

대 민정당 국회의원을 하며 11대 국회시절에는 민정당 전남도지부장을 지냈으며 '83년 국회농수산위원장을 빌탁되어 12대 국회의원 '87년 5월까지 농수산위원장직을 맡았다.

김장관은 평소 활달한 성격에 대범한 업무처리를 하며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취미는 바둑이며 부인 정영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제일제당 양돈업 포기선언

제일제당이 국내 최대규모 양돈장인 용인양돈장을 '91년까지 완전 폐쇄키로 하고 현재 사육 중인 4만5천두를 '89년부터 매년 1만5천두씩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년부터 줄이기로 한 1만5천두는 희망농가와 사내직원에게 원가분양하고 제일제당이 필요로 하는 연간 30만두분의 육가공 원료돈은 전량 양돈농가에서 수매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들여온 400여두의 원종돈은 용인양돈장에서 계속 보존관리하되 종돈분양사업은 여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종돈분양사업을 넘길 방침이다.

용인양돈장은 도시자본의 축산업 침투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질타를 받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 양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양돈기술 과학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설과 사육방식을 개발해왔고 컴퓨터를 이용한 사양관리방법을 도입하는 등 사양기술 발전에 앞장서 왔고 많은 우량종돈을 보급해 왔다.

제일제당이 양돈업을 양축가에게 넘김에 따라 연간 8만두 가량이 양축가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삼성외에도 두산, 미원, 사조 등 모든 500두 이상 사육업체 41개 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의 양돈업 포기나 감축이 예상된다.

정부미 12분도 도정

정부는 금년부터 정부가 수매한 통일계 '88년산 햅쌀을 12분도로 도정하여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12분도 신곡정부미는 전체 쌀수요량의 9.3%에 해당하는 360만섬이다. 가격은 현재 시중 일반미값의 절반수준인 80kg 가마당 51,770원으로 공급된다.

정부의 수매가는 80kg 정곡 가마당 84,840원(2등품)이었으나 소비자 판매가격은 51,770원으로 막대한 양특적자가 예상된다.

'89년 국민1인당 국민소득 4,570 \$ 예상

3년 연속 12%대의 고도경제성장과 원화평가절상에 힘입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8년도에 3,728\$를 기록했고 금년에는 4,570\$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경제는 80% 내외의 적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수지 흑자도 95~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91년까지는 연평균 7.5%의 성장이 가능하고 92년 이후 2천년까지는 6.8%의 높은 경제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9년 상반기 돼지고기값 '88년보다 3.3% 오를듯

'89년도 돼지고기값은 자연수요증가 10%를 전제 할 때 상반기중 도축수요가 전년도 상반기보다 9.4%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소폭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돼지고기값이 상승될 것으로 보는 요인은 도축두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사료값인상 자극으로 사육두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공해와 질병문제로 사육두수가 감소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기업

의 양돈업 포기도 호재로 작용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쇠고기가격이 대폭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돈사의 신·증축 완화로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또한 경제성장율이 '88년에 12.1%에서 '89년 8.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월별 돼지고기값을 kg당 1월 1,687원, 2월 1,743원, 3월 1,876원, 4월 2,050원, 5월 2,151원, 6월 2,067원, 7월 1,881원 8월 1,939원으로 전망했다.

전북양계협동조합 현판식

전북양계협동조합(조합장 이기동)은 지난 12월13일 전주시 진북동에서 조합원 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32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북양계조합은 지난 11월22일 농림수산부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89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 1조4,830억원

—전년대비 19.6% 증액—

국회는 '89년도 예산안을 19조 2,284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1조 4,83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88년은 예산 1조 2,402억원보다 19.6% 증가된 액수이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1조 3,891억원이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농어가부채경감에 2천억원이 책정되는 등 계수조정을 거쳐 939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부

처별 확정예산은 농림수산부가 1조2,281억원, 농업진흥청 448억8천7백만원, 산림청 706억6백만원, 수산청 1394억6천6백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었다.

사료산업의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경제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

지난 12월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경제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중 사료산업의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고려대학교 채서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생산자, 관련업계의 토론을 가졌다.

이날 채서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료공장 허가제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만이 중소기업을 인수 또는 임대하여 시장을 장식하고 있고, 또한 배합사료 수요증가에 따른 이익이 소비자에게 환수되지 않고 기득권자인 사료업자들만의 이익분배에 불과하게 되는 등 여러문제가 있어 허가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였다. 사료용 곡물의 수입쿼터제, 곡물사용비율 규제, 대두박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채교수는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해 생산은 자가사료배합까지 허용시키되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한 공장의 경제규모인 일산 300톤을 한도로 한다. △곡물의 수입은 완전자유화하여 누구든지 수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입결제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구를 제공한다. △원료, 반제품 등을 시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통기구를 만든다.

또한 국산육수수 등은 전량 수매하여 국내에서 수입곡물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산업과 사료산업 전체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